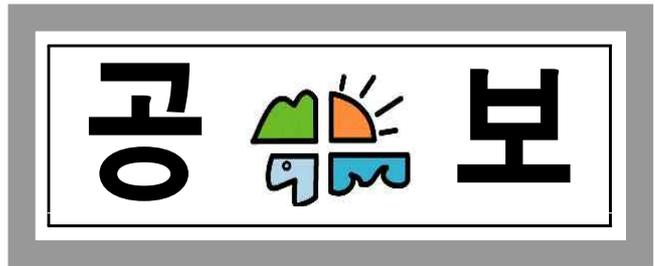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194호 2019년 2월 8일(금)

규 칙

-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..... 2

훈 령

- 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정 3

공 고

-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0
-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2
- 공인 폐기사항 공고 14

속초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2월 8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규칙 제1426호

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

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명백히하고, 행정사무의”를 “명백히 하고, 행정사무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각 실·과·소장”을 “국장, 담당관·과·소장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사무배분의 원칙) 시장, 부시장, 국장, 담당관·과·소장,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.

① 시장의 결재 사항

1.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
2. 주요 시책·사업의 기본방향 결정
3.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
4.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
5.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

② 부시장의 전결사항

1.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
2. 장기적인 정책·목표·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
3. 국장, 담당관·과·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, 감독
4. 주요 인가·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

③ 국장의 전결사항

1.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
2. 해당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
3. 일반 인가·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
4.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, 감독

④ 담당관·과·소장의 전결사항

1.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
2.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
3.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
4.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·처리

⑤ 담당의 전결사항

1.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
2. 제증명 발급·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
3. 그 밖에 일상적·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사무

제4조제1항 중 “실·과·소장”을 “국장, 담당관·과·소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실·과·소장”을 “국장, 담당관·과·소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기획감사실장과 자치행정과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복지

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과 자치행정과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복지국장”으로 하고, “기획감사실장, 다른 실·과·소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, 다른 국장, 담당관·과·소장”으로, “실·과·소장”을 “국장, 담당관·과·소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 중 “다수인 관련민원”을 “다수인과 관련된 민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행정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 개정 이유

민선 7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「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」 일부개정령에 따라 부서간 담당사무 이관과 신규 및 폐지 업무를 반영하여 단위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을 조정·정비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, 행정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함.

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19년 2월 8일

속 초 시 장

인

속초시 훈령 제 720 호

2019 속초시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정

제1조(「속초시 투자사업 심사규정」의 개정) 속초시 투자사업 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예산경영 담당주사가”를 “예산담당이”로 한다.

제2조(「속초시 공무국외여행 규정」의 개정) 속초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, 위원은 경제개발국장, 기획예산담당관, 자치행정과장, 일자리경제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. 다만, 공무국외여행자가 심사위원 본인일 경우에는

심사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5조제3항 중 “서무후생담당”을 “공무국외여행 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속초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」의 개정) 속초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관리부서의 과장”을 “관리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4조(「속초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 규정」의 개정) 속초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지적정보업무담당”을 “지적정보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속초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」의 개정) 속초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안전방재과장”을 “안전총괄과장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속초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정」의 개정) 속초시도로관리심의회 설치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경제개발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속초시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 속초시 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부시장”을 “경제개발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공무직근로자 정원표

부 서 별	계	직 종 별				
		행정정보조원	단순노무원	도로보수원	환경미화원	청원경찰 (청원산림)
계	203	46	132	5	5	15
기획예산담당관						
자치행정과	10		10			
관광과	7		7			
문화체육과	2	2				
세무과	3	3				
회계과	8	1	4			3
주민생활지원과	5	5				
여성가족과	1	1				
교육청소년과	10	8	2			
민원토지과	5	5				
일자리경제과	2	2				
신성장사업과	1	1				
안전총괄과	1	1				
교통과	7		7			
해양수산과	0					
환경위생과	7		7			
건설도시과	5			5		
건축과	3	1	2			
공원녹지과	13		10			3
농업기술센터	5	1	4			
보건소	22		22			
상수도사업소	20	2	12			6
하수도사업소	7		6			1
시립박물관	11	1	8			2
환경자원사업소	6		1		5	
도서체육센터	30		30			
영랑동	2	2				
동명동	1	1				
금호동	1	1				
교동	1	1				
노학동	1	1				
조양동	1	1				
청호동	1	1				
대포동	1	1				
시의회	3	3				

<별표 1>

상황근무자 근무수칙

-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-

1.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.
2. 준수사항
 - 지정 근무시간 30분전에 도착, 상황 인수·인계
 - 당일 상황근무자는 30분전에 상황실에 도착, 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(前) 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
 - 근무시작 즉시 NDMS에 등록하여 시도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신고
 - 전(前)근무자는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 및 다음 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실장에게 신고 후 퇴청
3. 보고서 작성기준
 - 평시 : “재난안전 일일상황” 보고서(07시 기준) 작성
 - 수시 : 재난 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(최초 - 중간 - 최종)
4. 상황보고 및 전파
 - 시장, 부시장 및 안전총괄과장에게는 상황실장 또는 상황근무자가 직접 보고
 - 유관기관 및 단체에 상황전파시스템, 유선, FAX 등을 활용하여 전파
 -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
5.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·확인하고, 교대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·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.
6.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·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7.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.
8.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9.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 외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. 단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.
10.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.

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(신고)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.

2019년 2월 7일

속 초 시 장

- 가. 공 고 명 :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- 나. 도로위치 : 속초시 도문동 909-10번지
- 다. 공고방법 : 속초시공보, 홈페이지, 각 동주민센터 게시판
전국 시군구 홈페이지
- 라. 공고기간 : 2019. 2. 8. ~ 2. 28. (21일간)
- 마. 도로 지정(변경)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	소유자	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신고번호 (신고 수리일)	비고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강원도 속초시 도문동	909-10	전	538	95	김호종	속초시 도문동 909-10번지 단독주택 2016-건축디자인과 -건축신고-제5호 (신고일 : 2016. 2. 25.)	건축주 : 김호종

- 마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- 바. 관계도서 : 속초시청 건축과 비치(열람가능)
- 사. 문의사항 : 건축과 건축허가팀(033-639-2256)

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(신고)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.

2019년 2월 7일

속 초 시 장

- 가. 공 고 명 :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
- 나. 도로위치 : 속초시 도문동 481-2번지
- 다. 공고방법 : 속초시공보, 홈페이지, 각 동주민센터 게시판
전국 시군구 홈페이지
- 라. 공고기간 : 2019. 2. 8. ~ 2. 28. (21일간)
- 마. 도로 지정(변경) 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	소유자	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신고번호 (신고 수리일)	비고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강원도 속초시 도문동	481-2	전	1,624	170	유수안	속초시 도문동 481-2번지 단독주택 2019-건축과 -건축신고-제8호 (신고일 : 2019. 2. 7.)	건축주 : 김해현

- 마. 공고방법 :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
- 바. 관계도서 : 속초시청 건축과 비치(열람가능)
- 사. 문의사항 : 건축과 건축허가팀(033-639-225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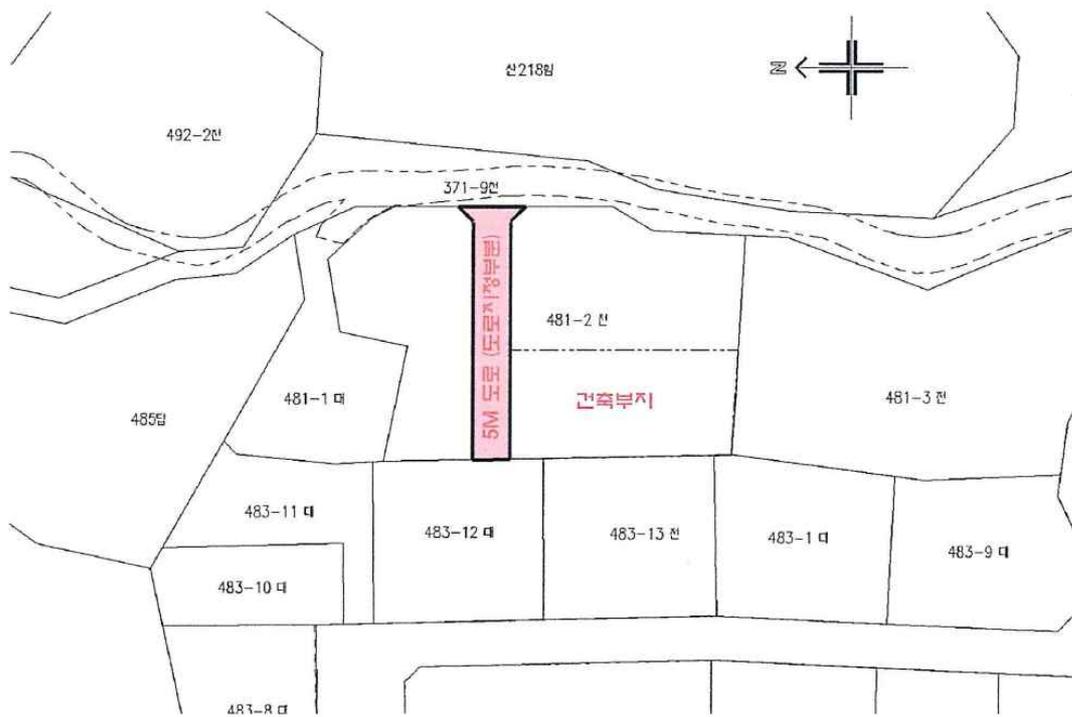
위치도 및 현황도

•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.



위 치 도

축 척 NONE



도로 지정 현황도

축 척 NONE

공 고

속초시 공인 조례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8일

속 초 시 장

1. 공인 폐기 사유

— 「속초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폐지에 따른 공인 폐기

2. 폐기 공인명 및 인영 : 1개

구분	공 인 명	인 영	규격	폐기예정일 (최초사용일)	비고
폐기	속초시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출납원인		가로(1.8cm)× 세로(1.8cm)	2019. 2. 8. (2017. 5. 1.)	